

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154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2012.04.01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, 2020.03.31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, 2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
- 다.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 상담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2.03.31.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-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
- 현 위탁법인은 청소년 미디어(인터넷, 스마트폰) 과의존 실태조사를 통한 시급한 현안 과제 선별,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인터넷중독과 상담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
- 지난 3년간 스마트폰 중독, 사이버도박 중독, 사이버 폭력 등 미디어 매체의 피해를 선제적, 전문적으로 개입하고, 지역의 유관 기관(성북강북교육지원청, 강북구보건소 등)과 공동사례관리 등 강북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,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
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층
- 시설규모 : 212㎡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학부모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년(2020.4.1. ~ 2022.3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821백만원('19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363백만원, 운영비 208백만원, 사업비 25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(☎2133-4130)